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400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7.[1]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거부처분(별지1 기재 각 압류처분에 관한 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는 처분일이 2018. 12.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경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B대학을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으로서 2017. 3. 1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3 부동산 목록 '압류재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979,185,820원을 체납하자, 2007. 8. 7.부터 2008. 9. 5.까지 3회에 걸쳐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각 757,590원을 체납하자, 2007. 8. 7.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8. [redacted]공사에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 17. 피고에게 체납액 436,173,330원을 2009. 2. 28.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공매의 보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공매를 중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7. 8. 원고가 체납액 납부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의 공매를 재의뢰 하였으나, [redacted]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매가 중지되었다.

바. 피고는 2012. 6. 29.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3 내지 28번 '압류재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3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압류하였다(이하 별지1 기재 각 압류처분의 대상인 별지2 부동산 목록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이라 한다). 이에 원고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피고의 압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압류재산		압류일
	지번 및 호수	물건형태	
수익용	[redacted]시 C 오피스텔 D, E호	건축물(집합)	2007. 8. 7.
	[redacted]시 C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건축물(집합)	2012. 6. 29.
	[redacted]시 C 오피스텔 M호	건축물(집합)	2013. 2. 21.
	[redacted]시 C 오피스텔 N호	건축물(집합)	2013. 8. 20.
	[redacted]시 C 오피스텔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건축물(집합)	2016. 5. 16.
교육용	[redacted]시 AF, AG	토지	2007. 8. 7.
	[redacted]시 AH, AI, AJ, AK, AL 내 AM동, AN동, AO동	건축물(집합)	2007. 8. 29.
	[redacted]시 AP	토지	2007. 8. 29.
	[redacted]시 AK, AL	토지	2008. 9. 5.

사. [redacted]장관은 2017. 11. 7. 원고 소유의 기본재산 전체(이 사건 수익용, 교육용 부동산 모두 포함)에 대한 처분을 허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 26. AQ, AR에게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총 28실)을 91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3. 14. AR에게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 중 D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3. 14. 접수 제23394호로, AQ에게 위 D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3. 14. 접수 제2339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자.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인 재산세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74,760,850원(총 294건)을 납부하였다.

차. 원고는 2018.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체납액 74,760,850원을 납부하였으니 구 지방세징수법(2020. 3. 24. 법률 제17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구'라 한다)

카.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인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의 의미는 체납자가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거나 부과처분의 오류로 전액 취소되어 체납액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A은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인 오피스텔 28채에 부과되어 체납된 재산세(당해세) 74,760,850원은 납부하였지만, 그 사실만으로 또 다른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즉시 압류해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타.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9. 4. 30. 기준으로 1,602,661,240원(총 58건, 별지2 부동산 목록 체납총액 기재와 같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체납액 74,760,850원을 납부하였고 이는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납부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나. 설령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구 지방세징수법 제43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체납액 74,760,850원을 납부한 것은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은 이와 같이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기속재량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이 사건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요구에 대응하여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의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서 정한 압류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압류해제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가 그 신청을 거부한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1)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2)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2018. 3. 14.) 원고의 체납액은 원고가 2018. 12. 17. 납부한 체납액 74,760,850원 부분을 제외하고도 1,532,659,950원이 존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까지 전소유자인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2018. 3. 15.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인 재산세 등 74,760,85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도 15억 원을 상회하는 체납액이 잔존하는 이상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납부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해제를 하여야 하는지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은, 원고가 2018. 3. 15. 납부한 74,760,850원을 제외하고도 15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9. 4. 30. 기준으로는 16억 원을 넘어섰다.

2)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은 2017. 11. 7.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고가 온비드를 활용하여 매각 중이나 현재까지 26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감정평가액의 6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매각이 불투명하므로, 이 사건 교육용 부동산의 매각으로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고의 체납액이 전액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2007년부터 10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여 왔고,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 중 일부(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2번)도 2007년경부터 체납처분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8. 3. 15. 총 체납액의 약 4%(= 74,760,860원/ 74,760,860원 + 1,532,659,950원)에 불과한 74,760,860원을 납부하는 외에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별지1

압류해제를 구한 압류처분

1. 피고가 2007. 8. 7. 피고청 세정과-AS로서 체납액 757,590원으로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2번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 피고 산하 [redacted]구가 2012. 6. 29. [redacted]구 세무과-AT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9번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3. 피고 산하[redacted]구가 2013. 2. 21. [redacted]구 세무과-AU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0번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4. 피고 산하 [redacted]구가 2013. 8. 20. [redacted]구 세무과-AV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1번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5. 피고 산하 [redacted]구가 2016. 5. 16. [redacted]구 세무과-AW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12 내지 28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체납 처분일자	등기접수번호 (압류)	체납액 (단위: 원)	압류재산
				물건지
1	2007.08.07. (시청 세정과-AS)	2007.08.08. 제77593호	757,590 (재산세)	[redacted]구 C오피스텔 제9층 D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X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	2007.08.07. (시청 세정과-AS)	2007.08.08. 제77593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9층 E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Y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3	2012.06.29. ([redacted]구 세무과 -AT)	2012.06.29. 제64047호	53,897,13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F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Z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4	2012.06.29. [redacted]구 세무과 -AT)	2012.06.29. 제64049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G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A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5	2012.06.29. ([redacted]구 세무과 -AT)	2012.06.29. 제64050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H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B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6	2012.06.29. ([redacted]구 세무과 -AT)	2012.06.29. 제64051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I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C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7	2012.06.29. ([redacted]구 세무과 -AT)	2012.06.29. 제64052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J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D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8	2012.06.29. [redacted]구 세무과 -AT)	2012.06.29. 제64053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K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E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9	2012.06.29. [redacted]구 세무과 -AT)	2012.06.29. 제64048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L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F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0	2013.02.21. ([redacted]구 세무과 -AU)	2013.02.21. 제15086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M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G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1	2013.08.20. ([redacted]구 세무과 -AV)	2013.08.20. 제85915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N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H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2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24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O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I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3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34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P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J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4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35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Q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K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5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36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R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L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6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37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0층 S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M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7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38호	757,59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T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N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8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39호	778,77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U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19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40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V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P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0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16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W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Q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1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17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X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R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2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25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Y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S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3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18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Z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T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4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19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AA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U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5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20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AB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V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6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21호	640,13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AC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W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7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22호	826,76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AD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X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28	2016.05.16. ([redacted]구 세무과 -AW)	2016.05.16. 제44823호	640,130 (재산세)	같은 오피스텔 제11층 AE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BY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오피스텔) 면 적 : 20.637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 685.7 분의 1.984
수익용재산 총 체납액			74,760,850 (체납세납부일: 2018. 3. 1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별지3

부동산 목록

순번	체납 처분일자	등기접수 번호(압류)	체납액 (단위: 원)	압류재산 물건지	감정가액 (단위: 원)
1	2007.08.07. (세정과-BZ)	2007.08.08. 제77594호		[redacted]구 AF *토지의 표시 지목 : 전 면적 : 1,101㎡	346,815,000
2	2007.08.07. (세정과-BZ)	2007.08.08. 제77594호		[redacted]구 AG *토지의 표시 지목 : 임야 면적 : 61,785㎡	2,286,045,000
3	2007.08.29. (세정과-CA)	2007.08.29. 제83434호	본 세 (취득세 및 등록세) 979,185,820 가산금 623,475,420	[redacted]구 AH 외 4필지 및 지상건물 *토지 ① [redacted]구 AH, ② AI, ③ AJ, ④ AK, ⑤ AL *건물내역 AM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교육연구시설(대학) 지하1층 1,112.88㎡ 1층 1,383.12㎡ 2층 1,342.89㎡ 3층 1,383.93㎡ 4층 1,383.93㎡ 옥탑 170.34㎡ 물탱크, 계단탑 *건물내역 AN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교육연구시설(대학) 지하1층 779.52㎡ 1층 1,387.77㎡ 2층 1,326.74㎡ 3층 1,326.74㎡ 4층 1,326.74㎡	5,541,985,6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옥탑 163.47㎡ 물탱크, 계단탑 *건물내역 AO동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정화조기계실 189.09㎡	
4	2007.08.29. (세정과-CA)	2007.08.29. 제83435호		[redacted]구 AP *토지의 표시 지목 : 학교용지 면적 : 67,339㎡	21,211,785,000
5	2008.09.05. ([redacted]구 세정과-CB)	2008.09.05. 제83091호		[redacted]구 AK *토지의 표시 지목 : 학교용지 면적 : 108㎡	34,020,000
6	2008.09.05. ([redacted]구 세정과-CB)	2008.09.05. 제83092호		[redacted]구 AL *토지의 표시 지목 : 학교용지 면적 : 1,329㎡	418,635,000
체납총액 (2019. 4. 30. 기준)			1,602,661,240	감정가총액	29,839,285,620
체납총액/감정가총액 = 0.005370987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7

별지4

관련 법령

❑ 구 지방세징수법(2020. 3. 24. 법률 제17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